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21453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21453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26 선고 2017가단7095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김용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변론 종결 2020. 10. 29.

판결 선고 2020. 11. 1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26. 선고 2017가단7095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4,43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1.부터 2020.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9,591,460원 및 그 중 14,457,9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8.부터, 2,989,896원에 대하여는 2017. 9. 17.부터, 2,143,664원에 대하여는 2018. 5. 30.부터 각 2020.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7,225,464원 및 그 중 38,155,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1.부터, 4,571,04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5.부터, 4,499,424원에 대하여는 2012. 9. 17.부터 각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6,164,841원 및 그 중 4,822,704원에 대하여는 2013. 9. 17.부터, 4,822,704원에 대하여는 2014. 9. 17.부터, 4,902,312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4,198,680원에 대하여는 2016. 9. 17.부터, 4,320,660원에 대하여는 2017. 9. 17.부터, 3,097,781원에 대하여는 2018. 5. 30.부터 각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1)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강관재자비"를 "강관자재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용수잠관이 설치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고, 원고 A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10. 10. 15.인데, 원고 A 이전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용수잠관의 존재를 수인하고, 시설물의 철거 등 어떠한 소유권 행사를 한 적이 없었으며, 원고 A 또한 이 사건 대지의 지하에 이 사건 용수잠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승계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목적과 함께, 그 토지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이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통하여 외관에 어느 정도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 하락이 반영되어 있었는지,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무상 제공한 것이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인적 관계 또는 그 토지 사용 등을 위한 관련 법령상의 허가·등록 등과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관련성이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소유자들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원고 A이 이 사건 대지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대지는 I, J, K, L, M, N이 1986.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약 25년의 기간 동안 소유자의 별다른 변동이 없다가(I의 지분에 관하여만 2008. 7. 5. 상속으로 원인으로 그의 상속인들인 O, P, Q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 A이 2010. 10. 15.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용수잠관의 설치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사용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이 사건 용수잠관이 설치된 때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이 사건 용수잠관의 설치 및 존재가 문제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이 사건 대지 전체 면적(1,311㎡)에서 이 사건 용수잠관이 차지하는 면적(42.80㎡)은 약 3.26%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수잠관은 이 사건 대지의 남쪽 끝부분에 치우쳐 매립된 상태로

위치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과 그 이전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용수잠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채 이 사건 용수잠관의 사용을 용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④ 또한 이 사건 용수잠관은 불특정 다수 공중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대지 인근의 일부 농민들을 위한 수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소유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형량을 하여 보면, 지하에 매설된 이 사건 용수잠관의 공공성이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한 원고들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큰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7행 ~ 제7쪽 제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이 법원의 R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용수잠관으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이 0.692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수잠관이 이 사건 대지의 지표로부터 약 1m 정도 깊이에 매설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입체이용저해율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함이 옳다. 이에 의하면, 각 기간에 따른 원고별 임료는 별지3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 제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용수잠관 이설 공사비 38,155,000원 및 2010. 10. 15.부터 2012. 9. 16.까지 이 사건 용수잠관 부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6,276,760원2) (= 위 기간 동안 실질 임료 9,070,464원 × 입체이용저해율 0.692)의 합계 44,431,7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이행청구일인 2013.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2010. 12. 13. 이미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에 관한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원고 A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1. 3. 1.부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13. 원고 A에게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용수잠관이 이 사건 대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태이며, 원고가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공 중 관로 이설에 소요되는 자재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자재는 14kg/cm²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관을 설치하여 주시고, 특히 접속구간 도면 검토 결과 구조도(상세도)가 없어 검토할 수 없어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 후 공사비 청구에 대하여 우리 지사에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공문의 취지상 이는 원고 A이 이 사건 용수잠관의 이설 공사를 하기 이전 피고에게 미리 예상되는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이후 이설 공사를 실제 시행함에 따라 확정되어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9행 ~ 제9쪽 제5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9. 17.부터 2018. 5. 29.까지 이 사건 용수잠관 부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19,591,460원(= 위 기간 동안 실질 임료 26,164,841원 × 입체이용저해율 0.692) 및 그 중 14,457,9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 18.부터, 2,989,896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7.부터, 2,143,664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3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뒤에 별지3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문성

판사김혜선

판사박세황

별지

- 1) 원고들은 항소장에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취지 전부에 대한 판결을 다시 구하는 취지로 항소취지를 기재하였는데, 원고들의 취지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취지를 적절히 변경한다.
- 2)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